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안 번호	388
----------	-----

제출연월일 : 2006. 1.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정이유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위원회 별로 개별 조례나 교육규칙 또는 훈령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제1항)
- 나.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제2항)
- 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제3항)
- 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함.(안 제4조)
- 마.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함(안 제5조)
- 바.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수당 등 실비변상 조항을 개정함.(부칙안 제2조 및 제3조)

□ 제정조례안 : 붙임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및 사이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교육규칙 및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5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비용 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를 삭제 한다.

②충청북도단체교육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를 삭제 한다.

③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를 삭제 한다.

④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를 삭제 한다.

⑤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를 삭제 한다.

⑥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를 삭제 한다.

⑦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를 삭제 한다.